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7. 20 선고 2021가단1121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5. 18.

판 결 선 고 2022. 7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전 2,631㎡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1982. 11. 10. 접수 제8729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선해하였다).

이 유

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1982. 11. 10. 경북 의성군 C 전 2,631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고 한다)에 관하여 같은 날짜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D으로 하고

채권최고액을 2,000,000원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’라고 한다)가 마쳐진 사실, 1999. 10. 26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. 12. 18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, 그 후 E이 사망하자 2007. 9. 4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. 9. 5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E의 아들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.

원고는, 선택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변제되거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.

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살펴본다.

기록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권리의 종류가 확인되지는 아니하나,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민사상 채권으로 보더라도,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최초 소멸시효기간의 진행 시점이 언제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 D이 1982. 11. 10.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중단되었다가 다시 새로이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.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D에 대한 위 민사상 채권은 1982. 11. 10.로부터 10년의 시효소멸기간이 경과한 1992. 11. 11. 시효로 소멸하는데, 달리 위 소멸시효기간의 진행 중 시효중단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위 민사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므로,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현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이순형